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안은

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

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

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

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까지 완화가 가능하되,

공공기여 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

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사항을

반영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,  
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 
공공기여 비용은 ‘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 
부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’로 정하고,  
공공기여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을  
제공하는데 사용하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